

한민족어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본 학회의 회칙 제7장 제18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편집위원은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1.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의뢰에 관한 사항
3. 논문 투고 및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 (자격)

1.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한 연구자로 인선하되, 학술 연구업적과 학회 활동 참여, 전공 등을 고려한다.
2. 편집위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선출 시기 직전 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 규모의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3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 서적을 출판한 실적을 갖춰야 한다.

제6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 학술상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사 및 의결권을 가진다.

1. 학회지 논문심사 관련

- 1)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해 전공 영역의 연구자 가운데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를 의뢰할 경우,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공개함으로써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 3) 논문 심사 결과와 <심사 규정> 제4조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 4) 논문 심사 과정 중,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 혹은 게재를 유보한다.

2. 학술상 논문심사 관련

- 1)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 심사위원을 4명을 추천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3)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 (소집)

1. 편집위원회는 학회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해 소집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